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안이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5호, '21. 5. 18. 공포, '21. 11. 19. 시행) 개정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추가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16조제1항제1호바목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00호 및 제102호 개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등 확인서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예정일 등을 작성토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별지 제10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예정일)”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2. 신청내용

①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에 []아니오
④ 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에 []아니오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에 []아니오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에 (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아니오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조기복직 또는 []퇴사: []에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 []취직 또는 []창업: []에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 소득(예정)액: 원(취직 또는 창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에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부터 까지), []아니오
⑨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첨부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로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2호서식 제6항 중 “성명”을 “성명(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미기재)”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7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예정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⑥란은 공란으로 두고, ⑦란
에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미기재)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 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 우 가. ~ 마. (생 략) <u><신 설></u> 2. (생 략) ②·③ (생 략)	---. 1.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 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말한다)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사본 1부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7